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79 발의연월일: 2024. 12. 18.

발 의 자:이만희·강선영·이달희

서천호 · 김기웅 · 권성동

권영진 · 김정재 · 구자근

박형수 · 정점식 · 조은희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신고에 따라 출동한 현장에서 피해아동동의 보호를 위하여 분리조사,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 긴급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아동학대범죄가 지속 증가하고,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출동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등 책임의 부담으로 피해아동등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법경 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·조사 등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10조 의5 신설).

법률 제 호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5(직무활동에 대한 면책) 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제11조에 따른 현장출동이나,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, 제 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업무의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·형사상 책임과 징계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, 운영절차,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법무부렁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<u><신 설></u> | 제10조의5(직무활동에 대한 면 |
| | 책) 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 |
| | 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11조에 |
| | 따른 현장출동이나, 제12조에 |
| | 따른 응급조치, 제13조에 따른 |
| | 긴급임시조치 업무의 수행과 |
| | 그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|
| |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 |
| | 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과 징 |
| | 계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. |
| |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 |
| | 적인 기준, 운영절차, 그 밖에 |
| |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|
| | <u>정한다.</u> |